

## 제7기 대학평의위원회 제6회 회의록

- 일 시 : 2019. 10. 22.(화) 16:00 ~ 18:00
- 장 소 : 대학본관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김종훈, 이재설, 이용노, 김현수, 유창희, 전봉권

### ※ 회의안건

-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2020학년도 전주대학교 교비회계 예산편성지침(안) 자문

(전봉권 의원 기도)

의장: 간사께서 성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 정수 11명 중에 6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대학평의위원회 제6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차회의록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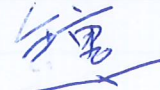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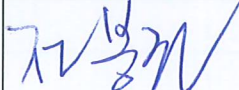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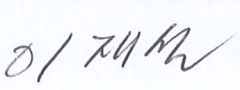
의장: 그럼 오늘의 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및 「2020학년도 전주대학교 교비회계 예산편성지침(안)」 자문입니다. 기획처장께서 회의 안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안건: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전주대학교 학칙 제3조(조직) 제1항 자구수정 「부동산대학원(폐지), 보건복지대학원(신설)」
- 전주대학교 학칙 제70조(교수회의 구성) 제3항제7호 신설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전주대학교 학칙 제73조(교무위원회) 제1항제3호 자구 추가 「대학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기획처장: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내용 상세 설명)

의장: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간서명	김종훈		전봉권		이재설	
-----	-----	---	-----	--	-----	---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학칙 제73조의 개정(안)의 내용에서, 「대학헌장」을 교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률의 일반적 개념에서 볼 때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기획처장: 금번 학칙 개정을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라고 판단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대학헌장」을 개정할 일이 발생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2: 본 학칙 제73조 개정(안)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전주대학교 학칙 제78조를 보면, 학칙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자문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기 개정(안)은 「전주대학교 학칙」뿐만 아니라 「대학헌장」까지도 교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심의사항을 교무위원회에 위임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률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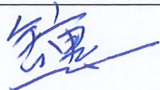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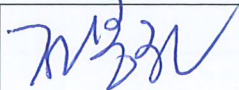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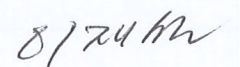
의장: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인데요. 대학헌장은 건학이념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러한 사항까지도 교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처장: 전주대학교 대학헌장 제30조에 있듯이, 최종적으로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헌장 개정(안)을 교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대학헌장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심의를 여러 번 거쳐야 개정이 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3: 학칙은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 개념으로서 일종의 상위 법률적 개념이잖아요. 이러한 상위 개념의 학칙까지 교무위원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와 같이 법률적 상·하위 개념에 따라 의결하는 기관이 다르듯이, 학칙을 기반으로 제정된 하위 규정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에서 상위 법률 개념인 「대학 헌장」과 「전주대학교 학칙」까지 심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자는 의견입니다.

기획처장: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칙 제7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그러면 「전주대학교 학칙」의 개정(안) 안건은 아래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칙 제3조, 제70조는 원안대로 통과, 제73조는 아래와 같이 수

간서명	김종훈		전봉권		이재설	
-----	-----	---	-----	--	-----	---

정(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주대학교 학칙(제73조)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p>제73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p> <p>1.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p> <p>2.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p> <p>3. <u>대학현장, 학칙 및</u>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자치기구(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자문할 수 있다.</p>	<p>제73조(교무위원회) ① &lt;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자치기구(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자문할 수 있다.</p> <p>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p>	<p>자구삭제, 호변경(현행규정으로 수정)</p> <p>호변경(현행규정으로 수정)</p>

의장: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의견 없습니다)

의장: 그러면,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칙 제3조, 제70조는 원안대로 통과, 제73조는 수정(안)으로 통과하였음을 공포합니다.

의장: 그러면, 이제 다음 안건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처장께서 설명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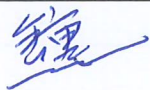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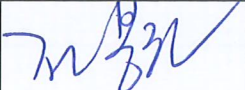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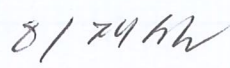
**안건: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대학원 학칙 제2조(조직) 제2항 자구수정 「부동산대학원(폐지), 보건복지대학원(신설)」
- 대학원 학칙 제5조(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제1호 및 제2호] 수정
- 대학원 학칙 제31조(학위수여) [별표 제3호 및 제4호] 수정

기획처장: (대학원 학칙 개정안 내용 상세 설명)

의장: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으로 추가의견은 없습니다.

간서명	김종훈		전봉권		이재설	
-----	-----	---	-----	--	-----	---

전원: (의견 없습니다)

의장: 네. 그러면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며,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공포합니다.

의장: 그러면, 이제 다음 안건인 「2020학년도 전주대학교 교비회계 예산편성지침(안)」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처장께서 설명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020학년도 전주대학교 교비회계 예산편성지침(안) 자문**

기획처장: (2020학년도 전주대학교 교비회계 예산편성지침(안) 내용 상세 설명)

의장: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자료 검토)

의장: 자료 66페이지부터 나와 있듯이 큰 틀에서 보면 제한된 수입에 대하여 3대 전략 방향, 9대 전략과제, 29개 세부전략 과제별로 지출을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자료 35페이지 3호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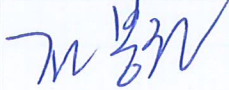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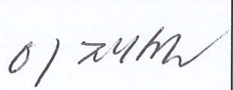
기획예산실장: 각 사업단, 국고사업 등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있다면,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의장: 자료 32페이지의 시간강사료 부분을 보면, 금55,000원/시간 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기획처장: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을 보면, 국립대학은 시간당 8~9만원 수준이고, 시간당 55,000원은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초과강의료가 시간당 2만원 인데,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말할 때, 등록금 수입대비 인건비도 중요 지표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그 수치가 70% 이면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간서명	김종훈		전봉권		이재설	
-----	-----	---	-----	--	-----	---

우리대학은 65% 수준입니다. 한편 작년에도 적자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적자 예산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더 노력하여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참고적으로 적자 예산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1주기 때 정원을 280명을 줄였고, 4년 누적으로 약1,200명이 줄었습니다. 그 금액이 약 70억~ 80억 수준입니다. 그 금액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적자 예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외국 유학생을 800명을 모집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약 700명 정도는 모집을 하였고, 앞으로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400명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한 국내 입학자원의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우리대학의 지리적 위치가 수도권같이 기업밀집지역이 아니다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처장과 학교측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처장: 네. 국가장학금 제도등 학생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집중 홍보하여 입학자원을 최대한 끌어 모으는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의견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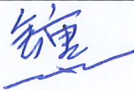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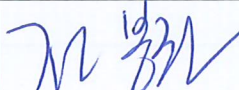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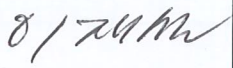
의장: 그러면, 전주대학교 「2020학년도 전주대학교 교비회계 예산편성 지침(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공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의 회의록에 대해서 간서명을 해주실 의원 한 분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훈 의장, 이재설 부의장, 전봉권 의원께서 간서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대학평의원회 제6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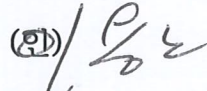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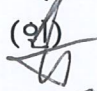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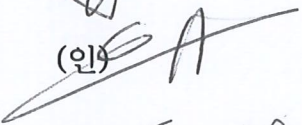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간서명	김종훈		전봉권		이재설	
-----	-----	---	-----	--	-----	---

2019. 10. 22.

위의 사실을 확인함.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김 종 훈	(인) 
부 의 장	이 재 설	(인) 
의 원	이 용 노	(인) 
의 원	김 현 수	(인) 
의 원	유 창 희	(인) 
의 원	전 봉 권	(인) 